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003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이선숙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9. 12. 13.

판결 선고 2020. 1. 10.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604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47,663원 및 그
중125,465,589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주식회사 B의 조달물자 구매계약 체결

(1) 서울지방조달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1. 1. 변경 전 명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를 통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5.12. 2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1 계약방법 : 일반경쟁, ② 수요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계약금액 : 173,413,130원, ④ 품명 : H용역, ⑤ 계약기간 : 계약 후 270일, ⑥ 납품기한 : 2006. 9. 23., ⑦ 검사·검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⑧ 지급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불'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H용역은 1 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사건 계약의 수요 및 검사·검수기관으로서 이 사건계약체결 전인 2005. 11. 18. 프로그램 개발조건으로 ①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된 워드프로세서는 'J회사'의 'K'를 기준으로 개발, ②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전자문서시스템용 프로그램(행정자치부 전자문서시스템 표준인증제품)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B은 위 개발조건을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B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등

(1)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L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비 중 선급금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2006. 3. 23.경 원고와 사이에 '1 피보험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보험가입금액 : 90,790,340원, ③ 보험기간 : 2006. 3. 23.부터 2006. 11. 23.까지, ④ 보증내용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지급보증으로서 보험기간 내 지급 예정인 1차 선급금을 담보'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은 원고에 게 그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와 G,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B이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부담할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6. 5. 1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8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험금 청구

(1) B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이후 2006. 10. 31.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및 그에 관한 사용자/운영자매뉴얼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2006. 11. 2. 실시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1차 기술심사에서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M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3인이 재심사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06. 11. 13. 실시된 2차 기술심사에서도 심사위원

5인 전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위와 같은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2006. 11. 15.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안요청서상의 기능 미구현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은 2006. 11. 23. B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6. 11. 22.경 B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기술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보완 및 기능개선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6. 11. 23. 원고에게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90,790,3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B의 대금 청구의 소 제기

(1) B은 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1379호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해지 통보가 이유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대금 86,710,000원(= 계약금액 173,413,130원 - 원고가 지급받은 선금금 86,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574)로 대한민국이 B에 대하여 선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서 2009. 6. 10.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 대한민국이 그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을 의무가 있고, 그 완성도가 70%임을 전제로 '대한민국이B에게 34,689,191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14754(본소), 2009나114761(반소)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주체는 수요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고 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62243(본소), 2011다62250(반소) 사건에서도 2011. 11. 24.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등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 단135030호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 측인 원고는 보조참가를 한 피고와 함께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일부 미완성된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일방적으로 그 이행의 완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므로,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8. 12.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B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으로서 납품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개발조건 등에서 정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서울지방조달청의 계약해제 통지에 기하여 2006. 11.23.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금액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B에게 지급한 선금금 상당액인 8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2006.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2015. 9.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행보증보험금으로 125,465,589원(= 원금 86,700,000원 + 지연손해금 38,765,589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선행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7739) 및 상고(대법원 2016다43988)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2017. 1. 16. 선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67,147,663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5,465,589원 + 2018. 6. 30.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41,682,074원) 및 그 중 위 125,465,589원에 대하여 2018. 7.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한도액이 90,790,34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도 위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한도액이 90,790,340원인 사실, 원고가 2015.9. 1. 선행 판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행보증금으로 125,465,589원(원금86,700,000원+지연손해금 38,765,58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한 위 이행보증금 원금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한도액 범위 내에 있다. 나아가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그 범위는 주채무자가 면책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면책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이며, 보증보험의 경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한도액 범위 내인 보험금 원금 86,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125,465,589원을 지급함으로써 B의 위 공단에 대한 채무[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무,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 가산된다(민법 제548조 제2항)]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는 B이 면책받은 125,465,589원 및 이에 대한 위 보험보증계약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5030호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감정인 지정신청이 완료된 이후에야 위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뒤늦은 고지로 인하여 결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신청대로 감정이 이루어져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선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바, 결국 원고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민법 제4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실없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5030호 사건에서 위 사건에 보조참가를 한 피고와 함께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음에도 위 법원이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등을 증거로 B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계약이 2006. 11. 23.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선행 판결을 선고한 사실과 선행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1.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선행 판결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제1심 법원에서 감정인을 N로 지정하고, 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판단을 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위 소송 제기 즉시 그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정인 N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7,147,663원 및 그 중 125,465,589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12. 12.까지 약정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기선, 판사 이미선, 판사 이준민